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37
----------	-------

발의연월일 : 2026. 1. 2.

발 의 자 : 안철수 · 김승수 · 배준영
진종오 · 이상휘 · 정성국
한기호 · 김형동 · 김상훈
최보운 · 조정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 창업 지원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요건이 제각각 달라 관련 정보가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은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그런데 서류 위조, 청탁 또는 알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거나, 정책자금 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확함에도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약속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문의 제재 규정이 없어 기업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 부당개입의 유형을 명시하고 제3자 부당개입을 금지하는 등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누구든지 제3자 부당개입을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78조의2 신설).
- 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8조의3 신설).
- 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을 행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음(안 제78조의5 신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부당개입의 금지 등

제78조의2(제3차 부당개입의 금지) 누구든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용자(이하 “정책자금 용자”라 한다)와 관련하여 용자를 신청한 중소기업(이하 “용자 신청기업”이라 한다)의 경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이하 “제3차 부당개입”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과장된 자료로 정책자금 용자 신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관련 자료를 위조·변조하여 주는 대가로 용자 신청기업으로부터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정책자금 용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확한 용자 신청기업을 기망하여 정책자금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 제공 또는 신청 대행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용자 신청기업으로부터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의 정책자금 용자와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용자 신청기업 및 그 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4. 정책자금 용자의 알선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용자 관련 자문 제공 또는 신청 대행을 해주거나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5.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용자 신청기업을 기망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용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78조의3(제3자 부당개입에 관한 자료요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 혹은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8조의4(제3자 부당개입의 신고 등)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3

자 부당개입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 혹은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제3자 부당개입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불송치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의5(부당개입자 명단 공개)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을 행한 자 또는 그 대표자(이하 “부당개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수사, 공판절차 또는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에게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그 밖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6(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협조요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4조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78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78조의2제1호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8조의2제2호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8조의2제3호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78조의2제5호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8조의2제1호에 따른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② 제78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의3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자 부당개입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하여지는 제3자 부당개입부터 적용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신 설></p>	<p><u>제6장의2 부당개입의 금지 등</u></p> <p><u>제78조의2(제3자 부당개입의 금지)</u> 누구든지 <u>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u>이 <u>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u>으로 시행하는 <u>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용자(이하 “정책자금 용자”라 한다)</u>와 <u>관련하여 용자를 신청한 중소기업(이하 “용자 신청기업”이라 한다)</u>의 <u>경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이하 “제3자 부당개입”이라 한다)</u>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u>허위·과장된 자료로 정책자금 용자 신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관련 자료를 위조·변조하여 주는 대가로 용자 신청기업으로부터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u></p> <p>2. <u>정책자금 용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확한</u></p>

용자 신청기업을 기망하여 정책자금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 제공 또는 신청 대행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용자 신청기업으로부터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직원의 정책자금 용자와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용자 신청기업 및 그 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4. 정책자금 용자의 알선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용자 관련 자문 제공 또는 신청 대행을 해주거나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5.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용자 신청기업을

<신 설>

기망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의 정책자금 용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78조의3(제3자 부당개입에 관
한 자료요구) 중소벤처기업진
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 사실
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자 신청기업
의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에게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진술 혹은 자료 제출의 요
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78조의4(제3자 부당개입의 신
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
단은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기
관 등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 혹은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제3자 부당개입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불송치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의5(부당개입자 명단 공개)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을 행한 자 또는 그 대표자(이하 “부당개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수사, 공판절차 또는 그 밖

<신 설>

<신 설>

제84조(벌칙) <신 설>

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
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에게 중
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통보
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③ 그 밖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6(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에 대한 협조요청)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
입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는 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4조(벌칙) ① 제78조의2를 위
반하여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처벌한다.

1. 제78조의2제1호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8조의2제2호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8조의2제3호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78조의2제5호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8조의2제1호에 따른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현행 제1항과 같음)

제8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8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① (생략)

제86조(과태료) ① (생략)

<신 설>

② (생략)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의 3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